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국회제출〉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5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국회 제출 (안 제3조의2 신설)	2
[참고]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

다. 회 부 일 : 2024.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국회 제출 (안 제3조¹)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자금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국회 제출(§3의2) - 기재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제3조제3항²)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하는 출자금 포함의 전년도 출자 실적 및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함(제1항) - 기재부장관은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출자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해야 함(제2항)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전년도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종합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출자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제3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납입토록 한 것은 1971년에 마련된 규정임.

[1971년 한국은행의 정부 출자금 대납 규정 개정내용]

법률 제1987호 1968. 3. 7. 일부개정	법률 제2311호 1971. 11. 16. 일부개정
제2조 (출자금) 정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표시의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을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다. 1. 국제통화기금 5천만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5천3백30만불 3. 국제개발협회 126만불 4. 국제금융공사 13만9천불 5. 아세아개발은행 3,000만불	제2조 (출자금)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표시의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을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다. 1. 국제통화기금 8천만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6천8백20만불 3. 국제개발협회 130만9천40불 4. 국제금융공사 13만9천불 5. 아세아개발은행 3,000만불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전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³⁾(이하 「국제금융기구가입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출자하는 경우(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경

3)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우(법 제2호제2항제2호)', 그 출자금에 대해 국회 의결을 미리 받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의 출자금을 대납할 경우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렇게 한국은행이 정부가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을 대납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출자계획, 해당 연도 출자 실적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동 규정에 따라 매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출자금은 없고,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부가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을 대납하는 출자금은 연평균 약 10억 달러임⁴⁾.

[최근 10년간(2015~2024년)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십억 원)

구분	법 제2조제2항제1호		법 제2조제2항제2호	
	달러기준	원화기준	달러기준	원화기준
2015	-	-	229.7	269.2
2016	-	-	7,561.3	9,137.8
2017	-	-	358.8	384.4
2018	-	-	354.5	396.4
2019	-	-	370.6	429.1
2020	-	-	261.8	284.8
2021	-	-	315.6	374.2
2022	-	-	247.9	314.2
2023	-	-	445.4	574.3
2024	-	-	217.0	291.3
합계	-	-	10,362.7	12,455.6
최근 10년 평균	-	-	1,036.3	1,245.6

자료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4) [참고 1]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참조. 참고로, 2025년의 경우 한국은행이 정부가 납부하여야 할 IMF 출자금 7.9조 원 등 약 8.2조원을 대납할 예정임.

그런데, 「대한민국헌법」⁵⁾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국제금융기구가입법」 규정이 이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⁶⁾. 특히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이후에 납입하여야 하는 출자금인바, 한국은행이 정부의 출자금을 매년 대납함에 따라 「국가재정법」⁷⁾상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함.

또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⁸⁾는 개정안에서

5)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3827호),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5155호),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361호),

7)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2조⁹⁾에 따라 「국제금융기구가입법」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는 출자금·출연금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정부의 출자금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경우 자체 평가 결과 및 예산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기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을 대납할 경우를 포함하여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전년도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다음 연도 출자계획 등이 담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확립하고, 출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정부가 과거에는 「국제금융기구가입법」에 따른 ‘출연금’의 경

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우에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으나, 현재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 전액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내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국제금융기구 출연」¹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므로, ‘출자금’ 역시 상기한 「대한민국헌법」, 「국가재정법」의 제 규정을 감안할 때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IMF 출자의 경우 전액 외환보유액으로 계상¹¹⁾되고, 기타 국제금융기구 출자의 경우 지분획득에 활용되어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등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을 통한 국제금

10)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3134-301)

[최근 10년간(2015~2024년)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십억 원)

구분	법제2조제2항제1호	법제2조제2항제2호
	달러기준	원화기준
2015	-	39.6
2016	-	38.4
2017	-	23.0
2018	-	22.1
2019	-	21.3
2020	-	29.1
2021	-	-
2022	-	42.1
2023	-	-
2024	-	-
합계	-	215.6

* 자료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 IMF 소말리아('20)·수단('22) 채무감면의 경우 IMF내 적립된 자원(특별인출권)으로 납입 → 한은-IMF 간 실제 자금이동은 없으나 한은 회계규정상 회계처리가 필요하여 계상

* 양허성기금인 아시아개발기금(ADF)의 경우 '20년까지 한은 외환보유액으로 납입하다 '21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납입

11)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요소 중 IMF 출자와 관련된 부분은 'IMF 포지션(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 중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권)',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보유액', '외환' 등이 있음. IMF 쿠틀 납입액은 IMF회원국이 IMF에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인데, 쿠틀 납입액 중 25%는 'SDR 보유액'으로, 75%는 '외환'으로 납입함. 우리나라가 IMF에 쿠틀 납입액을 출자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중 'SDR 보유액' 및 '외환'은 감소하나, 감소된 금액만큼 'IMF 포지션'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총액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됨.

용기구 ‘출자’는 특수성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모든 국제금융기구 출자를 예산 반영 없이 전부 한국은행을 통해 납입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¹²⁾이 있고, IMF 출자 이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은 대외지급준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2024년에는 국제금융기구에 원화 기준 2,913억원¹³⁾이 출자되어 해당 출자금액만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현행법 제2조제4항은 ‘다음 연도 출자 계획’, ‘해당 연도 출자 실적’ 및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존재함.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출자 실적’ 및 ‘다음연도 출자계획’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¹⁴⁾.

12) 「국제금융기구법」 제2조제3항은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한국은행 대납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13)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54억원,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466억원,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78억원, IDA(국제개발협회) 2,115억원, IFC(국제금융공사) 199억원

14) 그러나 현행법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중 ‘한국은행이 정부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경우(법 제2호제2항제2호)’에 대해서만 국회에 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출자하는 경우(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도 국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출자한 금액에 상응하여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에 한 평가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출자는 국제금융기구 신규 가입, 또는 국제금융기구 증자시 기존 지분율 등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금액으로, 출자금에 대한 성과평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체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한 외교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¹⁵⁾를 살펴보면 납부실적 및 다음 연도 납부계획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 항목·결과, 민간위원 개선의견, 심의·조정 결과의 예산 편성 환류 등 내용도 담겨 있어 출자금 납입액에 대응하여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단순한 출자금 실적 및 계획에 더하여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가

회에 실적 및 계획 등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앞선 표에서 알 수 있듯 2015년 이후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하는 금액은 없음.

15) [참고 3] ‘2024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 참조.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국제금융기구법 일부개정법률안」¹⁶⁾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16)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361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2(출자금 출자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국회 제출)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제3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하는 출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출자 실적 및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55

참고 1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단위: 십억 원)

	'17	'18	'19	'20	'21	'22	'23	'24	누계	'25 ^{e)}
합 계	498.6	503.1	551.8	367.7	591.5	469.6	733.6	636.4	04352.3	8428.4

출자 소계	384.4	396.4	429.1	284.8	374.2	314.2	574.3	291.3	3,048.7	8,167.0
AfDB	2.3	2.4	0.1	0.1	5.0	5.3	5.1	5.4	25.7	5.3
AfDF	36.0	35.5	35.6	38.7	39.6	40.0	47.1	46.6	319.2	46.6
AIIB	160.2	167.2	173.1	-	-	-	-	-	500.6	-
CABEI	-	-	-	36.7	73.4	7.1	43.5	7.8	168.6	7.8
EBRD	-	-	-	-	-	-	-	-	-	11.9
IBRD	-	-	27.7	26.0	28.4	30.3	30.9	-	143.4	-
IDA	152.8	164.2	164.5	166.8	190.3	191.9	387.7	211.5	1,629.8	211.7
IFC	-	-	-	-	31.6	33.7	34.3	19.9	119.6	19.9
IIC	33.1	27.1	28.0	16.4	6.0	5.9	-	-	116.4	-
IMF	-	-	-	-	-	-	25.6	-	25.6	7,863.7

출연 소계	114.2	106.7	122.7	82.9	217.3	155.4	159.3	345.1	1303.6	261.4
WB	56.7	62.3	63.7	48.7	100.7	68.0	63.2	144.9	608.1	141.2
ADB	42.0	41.6	44.5	33.9	54.8	43.1	43.5	49.4	0 352.8	0 61.2
AfDB	10.4	10.2	13.2	-	17.0	10.2	5.9	15.6	82.4	16.5
EBRD	4.6	4.5	4.4	4.8	4.0	3.9	7.0	71.2	104.4	8.7
IDB	10.4	9.4	16.1	3.6	24.1	13.9	10.5	15.7	103.6	11.0
IMF	3.5	3.4	5.5	11.8	4.8	57.8	17.3	36.4	0 140.4	0 22.8
AIIB	11.5	-	-	-	-	-	-	-	11.5	-
CABEI	-	-	-	11.9	11.9	11.9	11.9	11.9	59.5	-

* 2024년 달러기준 납입금액에 12.31일납입예정 (CABEI 출자, US\$ 5,625,000) 건도 포함되어 있음

* 예산기준, 각 연도별 편성환율 적용

참고 2

주요 국제금융기구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기구명	기구 개요			우리나라 관계		
	설립 연도	가맹 국수	설립목적 · 활동	가입 연도	아국 지분	관련성
IMF	1945.12	191	국제환거래 안정 및 국제수지 조정 지원	1955.8.	1.80%	융자수혜 195억 불 상환 완료
IBRD	1945.12	189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	1955.8	1.68%	융자수혜 154.7억 불 상환 완료
IDA	1960.9	174	저소득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 장기융자 공여	1961.5.	1.10%	'78년 IDA-5부터 수혜국 →공여국전환, '24.12월 IDA-21 최종회의 한국개최
IFC	1956.7	186	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	1964.3	1.32%	IFC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최근 8년간 19개 사업, 13.2억불 투자
MIGA	1988.4	182	대개도국 민간직접투자에 대한 보증	1988.7	0.45%	MIGA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최근 8년간 7개 사업, 2.94억불 지원
ADB	1966.8	69	아시아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1966.8 (창립 회원국)	5.03%	'23년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최(인천) e-Asia 지식협력기금 출연
EBRD	1991.3	75	중동부 유럽 정치 · 경제체제 전환국에 대한 개발금융지원	1991.3 (창립 회원국)	1.01%	기술협력기금 출연
AfDB	1964.9	81	아프리카 경제개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1982.12	0.47%	KOAFEC 장관급회의 개최 등 아프리카 진출기회 확대 지원
IDB	1959.12	48	중남미경제사회통합	2005.3	0.004%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한-중남미 간 기업교류 플랫폼 제공
AIIB	2016.1	110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간 협력증진	2016.1 (창립 회원국)	3.85%	지분율 5위, 영구이사국으로서 제 2차 연차총회 개최('17.5월, 제주)
CABEI	1960.12	15	중미 8개국 연합기구(SICA) 재정지원 및 핵심가치 공유	2020.1	9.0%	지분율 7위, 단독신탁기금 1개 운영

I. 국제기구분담금법 이행 현황

1.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

가. 개요

- 2022.1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구축
 - 2022년부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 중
-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통합 관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2023년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 개선
 -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 관련 주요국들의 의사결정 절차·기준에 대한 사례연구 등 실시
 - 상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평가 및 심의·조정 기준 등 개선 방안 마련

나. 2024년도 이행 현황

-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우리 정부가 재정 공여하는 주요 국제기구 관련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의 검토 병행
 - 각 기관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계획을 3월 31일까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 제출
 - 외교부 장관은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5월 31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 결과를 2025년 예산안 편성시 적극 고려

2. 2024년도 국제기구분담금법 이행 상세 현황

- 국제기구분담금 자체평가 및 심의·조정 기준 개선(1-2월)
 - 주요국 분담금 관리체계 조사 연구용역(영국 ODI, 2023.9-12월) 결과 반영
- 기관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실적·계획, 자체평가 결과 취합(3-4월)
 - 다자성 양자사업 및 여타 사업 분담금 중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은 사례 시정
 -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담금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 점검
- 외교부 유관부서 및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기관별 자료 검토(5월)
 - 범정부 차원에서 10건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 중인 국제기구의 경우, 재외공관 및 외교부 유관부서의 검토 추가

- 기관별 분담금 납부계획 심의·조정(안) 통보(5.14.)
 - 기관별 의견 수렴(5.14.-17.)
- 국제기구 분담금 실무위원회 개최(5.20.)
 - 기관별 추가 의견 수렴(5.20.-24.)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개최(5.27.)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심의·조정 결과 기획재정부 통보(5.31.)
-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 국회 제출(8.31.)

II. 중앙행정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결과

1. 개요

- 주요국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 조사 연구용역 결과, 관계기관,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평가 기준 개선 및 보완
 - 정량평가 항목 정비를 통한 객관성·효과성 제고
 - 정량평가 항목 중 <계획> 지표에 ‘국제기구 및 우리 기여 효과 관련 사전조사’ 항목 추가
 - ※ 기존 정량평가 항목: ①외교정책 목표 부합성 ②유사·중복 분담금 여부
 - 정성평가 항목은 기존 자체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기관별로 소관 분담금 전반에 대해 ▲우수한 점 ▲개선할 점 ▲기타 의견 등에 대해 기술
- 상기 개선·보완된 기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전년도 납부 실적과 납부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동 자체평가 내용은 국제기구 분담금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자체평가 항목

□ (정량평가) 분담금별로 납부 계획·과정·결과의 적절성 평가

구 분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절성	㉠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①북한 비핵화 추진 ②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③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⑤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⑥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⑦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 ⑧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여타 분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국제기구 및 우리 기여 효과 관련 사전조사
과정의 적절성	㉠ 예산 사용의 효율성(집행률) ㉡ 우리측 납부 목적 달성(우선순위 반영) 여부
결과의 적절성	㉠ 국제기구의 예산·사업 집행 완료 여부 ㉡ 국익 달성도* * 글로벌 가치 증진에 대한 우리 역할 및 기여 확대, 국제 규범 관련 논의시 우리 입장 반영, 우리 주요 외교정책 사안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 최근 5년 내 해당 기구 내 우리 영향력 강화, 최근 5년 내 우리 국민 진출 확대

□ (정성평가) 기관별 소관 분담금 전반에 대해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타 분담금과의 유사·중복성, 예산 사용의 효율성, 우리측 납부 목적 달성 여부, 국익 달성도 등 종합 평가

[기관별 자체평가 종합결과 예시]

연 번	분담금명	편성 구분	결과(정량평가)
1		신규 분담금	
2		계속 분담금	
3		계속 분담금	
정성평가	☐ 우수한 점 ☐ 개선할 점 ☐ 기타		

3. 자체평가 결과

- 총 40개 기관에서 701건의 분담금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
 - 계속 분담금 560건, 신규 분담금 119건, 종료 분담금 22건
- (정량평가) 계속 분담금은 평균 91.4점(100점 만점), 신규 분담금은 평균 37.4점(40점 만점), 종료 분담금은 평균 89.3점(100점 만점)으로 집계
 - (계획: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약 91%(636건)가 ▲세부목표③(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부목표④(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세부목표⑤(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에 기여한다고 기술
 - (과정: 예산 사용의 효율성) 약 98%(687건)가 여타 분담금과의 유사·중복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술
 - (결과: 국익 달성도) 약 70%(490건)가 국익 제고에 크게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술
- (정성평가) 대다수 기관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국제기구 분담금에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국제기구 간 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복수의 분담금을 납부중인 UNDP, UNICEF, OECD, UNESCAP 등 일부 국제기구에는 의무분담금 외 해당기구와 별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분담금 납부
 -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와 우리 정책목표와의 연계 강화 필요성 개선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기타 주요국의 기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기여 규모 확대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필요
 - 국제기구의 분담금 집행 수준 및 목적 달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속

- 국제기구 및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연계사업 검토
- 향후 국제기구와 신규 약정 체결 및 기존 약정 갱신 시, 재정 보고서 발간 의무화
- 비지정 기여 비중이 높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경우, 납부 목적 달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예산 수립단계와 집행단계에서 환율 차이로 인해, 국제기구 분담금이 적게 집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환차손 보전 방법 검토 필요
- 일부 분담금 예산 불용 사례 발생
 - 코로나19로 기존 납부 분담금 축적, 연례회의 취소 등으로 국제기구측 요청에 따른 분담금 미납부 등

Ⅲ.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1. 의의

- 총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701건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실적·계획과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실시
 - 총 701건 중 631건에 대해 심의, 이 중 43건에 대해 조정
 - 국제기구 분담금 실무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의한 평가 시행, 동 평가 결과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조정
 - 국제금융기구 대상 사업 2건, 중앙행정기관 미해당(중앙선관위) 사업 2건, 2025년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사업 66건 등 70건은 제외
- 주요국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하여, 심의·조정 기준 보완
 -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분담금의 경우 납부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재량분담금에 대해서는 정규재원-프로그램-프로젝트 순으로 우선 검토
 - (정규재원)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위상 제고, 국제기구의 효과적 활동 지원, 우리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우선 검토
 - (프로그램) 평화안보, 개발협력, 기후변화, 여성 등 우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된 특정 주제에 대한 기여 시 고려
 - (프로젝트) 재외공관/KOICA 미소재지, 분쟁·취약국 등 양자 사업이 어렵거나 국제기구 사업이 더욱 효율적일 경우 고려
-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2021년 제3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의결)을 반영,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검토와의 일관성 제고

- 공적개발원조(ODA) 해당 분담금의 경우,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간 조율을 통해 동일 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2. 심의·조정 기준

- 아래 기준에 따른 종합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조정 시행
 - 우리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여타 국제기구 분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우리나라 국익에 대한 기여도
 - 해당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우리 분담금 간 합치도
 - 해당 국제기구의 핵심 사업과 우리 분담금 간 연계성
 - 국제기구의 성과·투명성·효율성
 - 우리의 기여 순위 등 고려시 분담금 기여 효과 및 필요성
 - 직전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집행의 충실성
 - 해당 분담금이 당해 사업을 위한 최적의 예산인지 여부
 -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결과와의 정합성

3. 심의·조정 결과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실무위원회 (5.20.)의 검토를 거쳐 43건의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 아래 사유로 조정 시행(5.27.)
 - 해당 사업 중단으로 예산 편성 불필요
 - 기존 분담금 납부 사유 소멸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 결과와의 정합성 결여 등

4. 민간위원 개선의견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와의 정합성 제고) UNCTAD, UNDP, UNFPA 등 ODA 계상비율 100%인 국제기구 대상 분담금 중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미제출 사업에 대해 주의 필요
 - 내년부터는 ODA 계상비율 100%인 국제기구분담금을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흠결로 자동 부적정 처리 추진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 제출 필요
-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비용 면밀 점검) 고용휴직 외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비용 관련 분담금에 대해 파견 성과·필요성 등 면밀 점검 필요
 - 작년 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 관련 인건비로 지적된 UNESCAP·UNCTAD 등 대상 일부 분담금은 사무실 임차료, 비품비, 출장비 등 행정비용 명목으로 확인
 - 고용휴직 외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비용 관련 분담금에 대해 파견 성과·필요성 등 면밀한 점검 지속 추진
- (복수 기관 기여 국제기구 모니터링 강화) 복수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국가유산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무분담금 납부 중
 - 기관 간 기능 중복 여부 및 통합 가능성, 여타 국가 사례 등 점검 추진
- (비정부기구 분담금 제외) 비정부기구(INGO) 분담금은 국제기구분담금법

-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년부터 심의·조정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소관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 분담금 1건 제외

5. 심의·조정 결과의 예산 편성 환류

□ 조정한 분담금은 2025년 예산에 미편성

- 총 43건의 조정 대상 중 2건*을 제외한 분담금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 (보건복지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파견근무자 의무 지원 경비 / (국토교통부)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COSCAP-NA)

6. 2025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현황(정부안 기준)

□ (전체 규모) 약 1조 6,253억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책정

- 동 규모는 2024년 예산 대비 약 7.8% 증가한 수치

[최근 3년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391	565	557
규모(단위: 억원)	10,216	15,070	16,253

□ (기관별 분류) 외교부(KOICA 포함), 농식품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상위 5개 기관 소관 분담금이 전체의 86.7% 차지

[기관별 2025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계획안 현황]

기관	외교부 (KOICA 포함)	농식품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고용부	기타	총계
규모 (단위: 억원)	10,441	2,325	547	449	333	285	277	240	225	1,095	16,253

- 외교부(KOICA 포함) 분담금이 64.2%, 여타 관계기관이 35.8% 차지

IV. 총 평

1. 성과

- (평가기준 객관성 제고) 주요국 분담금 관리체계 조사 연구용역 결과 반영을 통해 자체평가 및 심의·조정 기준의 객관성 제고
 - (자체평가) △외교정책 목표 부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국제회의 개최 여부, 분쟁·취약국 해당 여부 등) △분담금 납부 대상 국제기구의 성과 점검 여부 △여타 주요국 공여 수준 등 평가 기준 추가
 - (심의·조정) △국제기구 분담금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심의·조정 기준* 마련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기준 중 적용 가능한 기준** 도입
- * 의무분담금의 경우 납부 근거를 중심 검토, 재량분담금의 경우 심의·조정에 주력
- ** 정규재원-프로그램-프로젝트 순으로 우선 검토 등
-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 복수 기관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국제기구의 경우 재외공관, 외교부 유관부서 등의 검토를 통해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 검증
 - OECD, UNESCAP, UNDP, UNESCO 등 복수 기관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주요 국제기구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분담금 기관별 납부 현황과 국제기구측 평가 등을 확인, 심의·조정시 활용
 -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 절차는 중앙정부기관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해 분담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
 - 외교부 내 각 국제기구 담당부서를 통해 기관 자체평가 결과 재검토 후 심의·조정에 참고
- (국제기구분담금법 적용 대상 명확화) 국제기구분담금법에 따라 심의·조정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화

- 금년에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정부기구(INGO) 대상 분담금을 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나 그간 자체평가 결과제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포함
 - 단, 2025년 분담금 납부계획이 없어 납부계획안에는 관련 내용 부재

□ (실무·심의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심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위 민간위원 재위촉을 통해 국제기구 분담금법 이행의 안정성·전문성 제고

※ 민간위원 구체 명단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위해 대외 비공개

- (ODA 관리체계와의 정합성 강화) ODA로 계상되는 분담금의 경우, 분담금 심의위원회 및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조정 결과 간 상호 정합성 제고
- ODA 계상비율 100%인 국제기구 대상 분담금 중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미제출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자동 부적정 처리 추진

2. 향후 발전 방향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의 일관성·정합성 강화) 각 중앙행정기관의 분담금, 운용 현황 정보 및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심의·조정 기준 등의 일관성·정합성 강화
- (분담금 업무의 전문성 제고) 국제기구분담금법 관련 실무·심의위 위원들의 전문성 배양 및 저변 확대 추진
- 심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배양을 위해 실무·심의위 민간위원이 주요 국제기구를 방문하여 분담금 납부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협의하는 방안 등 검토

- (조직 및 인력 보강) 수백 건의 분담금 검토, 민간위원들과의 상시 협의, 실무·심의위 개최 준비 등 업무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 내 조직 및 인력 보강 필요
- (기재부와 협의 강화) 기재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조정 결과의 예산 환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아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협의 실시
 - 국제기구분담금법 상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 종합보고서 제출에 앞서 정부 최종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일부 기관은 자체평가에서 환차손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한바, 개선방안 마련 추진